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3. 4. 12.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4월 12일 14:00 ~ 15:06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주 현 위원장 김 김 영 위 원 소 (의결 제88~106호) 대 영 원 권 위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유 재 훈 위 원 ०] 승 헌 위 원 김 용 위 원 진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3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 2023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80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령안』, 제81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폐지고시안』, 제82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폐지고시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폐지되어 실효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감독규정, 인가지침을 폐지하는 내용

-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83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4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85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에 대한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
 -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86호 『삼성카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삼성카드(주)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예비허가하는 내용
 - (위원) 삼성카드가 본허가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예비허가를 신청한 것이 몰라서 그랬던 것인지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 (보고자) 삼성카드㈜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거쳐 본허가를 신청하겠다고 하여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음.
- (위원) 본허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
- (보고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물적시설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예비허가를 받은 후 물적시설을 갖추고 그 후에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러한 과정을 따른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삼성카드㈜ 정도의 규모라면 본허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 (보고자) 심사를 맡고 있는 금융데이터감독팀장 이영기라고 함.
 작년 12월에 실무자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해 본 결과, 본허가를 신청할 때는 물적시설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로 인해 삼성카드가 1년간 휴지기를 가졌기 때문에 물적시설과 같은 부분에 있어 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았음.
 그렇기 때문에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음.
- (위원) 앞으로는 물적시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림.

- (보고자) 신청인과 충분히 협의하겠음.
- ㅇ 워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87호 『엠지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자회사에 부당하게 자산을 양도한 엠지손해보험(주)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한 김선기 (엠지손해보험 부장)에 대해 과태료 2,3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
 - 0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88호 『㈜KB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89호 『㈜KB국민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91호 『농협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91호 『농협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92호 『㈜신한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93호 『㈜신한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94호 『㈜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95호 『㈜우리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96호 『㈜하나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97호 『㈜하나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 지주·은행)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2022년 제출)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최근 3월에 실리콘밸리은행(SVB)사건과 크레딧스위스 건이 발생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음. 크레딧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UBS에 넘어가면서 처리가 빨랐는데, 조사한 것을 보니까 거기도 자체적으로 크레딧스위스(CS)가 워낙 부실이 많아서 자체 정리할 계획을 감독 당국과 계속 논의해 왔음.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결국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정리(resolution)식으로는 안 가고 다른 회사에 넘기는 해법(solution)을 취한 것으로 되는데 이 자체정상화계획도 그러한 하나의 제도의, 절차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임.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말고 저희가 다른 부실정리계획 이런 것들도 계획(plan) 같은 것이 있음. 이번 CS사건과 관련하여 좀 검토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2018년 이후에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에 대한 정리계획(Resolution Plan)들을 기획(scheme)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작동(working)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 저희들도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임.
- (보고자)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안건 자체는 원안대로 심의를 했음.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
 그래서 평가대상기관을 좀 확충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발동지표 요건이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SVB)나 크레딧

스위스(CS) 사태 등을 반영해서 조금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구체적으로는 유동성 지표 같은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음. 그래서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와 이야기를 해서 자체정상화계획 그리고 예보에서 하는 정리계획과 관련해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겠음.

○ (위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일부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됐음. 특히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함. 그래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전담기구는 굉장히 내실화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크레딧스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기들의 고유 업무 영역에서의 고유리스크가 이번에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고유 리스크 요인이 감안되어 발동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그래서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국채에 집중투자를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시가와 액면가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심각(serious)하게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자체 정상화나 부실회사 정리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며칠 만에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Time Plan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가 이번에 자체정상화계획은 승인을 하되 올해 10월에 다시 또 제출이 됨. 그때는 그러한 것들이 다 감안되어서 좀 더 면밀하게 반영되어 제출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에 거의 동감했었음.

-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98호 『나이스평가정보(주) 외 36개사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안』, 제99호 『나이스평가정보㈜ 외 30개 社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00호 『㈜루센트블록 및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 6개 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01호 『㈜편블 및 우리자산신탁㈜ 등 3개 신탁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02호 『신한카드㈜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 제103호 『삼성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104호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 제105호 『㈜부산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06호 『㈜하나은행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 23년도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내용
 - (위원) 제102호 신한카드 규제 개선 요청안 관련해서 신청인의 취지는 아마 여전법상의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여전법 등 주된 신청대상 규정에 대한 개선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고, 예비적으로 전금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어떨까 싶음.

- (위원) 저도 부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한카드에서는 여전법상의 개정을 요구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평가한 것처럼 소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조건이 들어간 한도 내에서 법제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법체계상 맞다고 해서 전금법상으로 가게 되면 법 자체가 아직도 입법이 안 되는 불확실성 상에 있고, 그리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적합하지 않은 개념인 것 같음. 차라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포인트처럼 여전법 내에서 가능한 한 해결하고 그것에서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른 부대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 (위원) 제가 지금 문구를 한번 불러드리겠음. 안건 종합의견에 마지막 동그라미 있지 않은지? '여전법령과 전금법령 등의 개정을 포함하여 카드사의 송금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 (위원) 좋음.
- (위원) 오늘 논의된 대로 안건 문구를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2호 안건은 내용을 논의된 대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 나머지 제98호부터 101호까지, 제103호부터 제106호까지 8개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단, 제102호는 수정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제7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06분 폐회)